

# 예산총칙

202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50,000,000	25,500,000
일반회계	792,687,632	23,780,629
특별회계	57,312,368	1,719,371
공기업특별회계	27,202,284	816,06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202,284	816,069
기타특별회계	30,110,084	903,303
의료급여기금	1,211,598	36,348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10,000	30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87,672	2,63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14,300	15,429
치수사업	768,256	23,048
수질개선	27,518,258	825,54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없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024,97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5,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